

의안번호	제 63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10월 일 (제335회)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
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학철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4년 10월 일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학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10월 일

발 의 자 : 김학철·이양섭·김인수·박우양·
이의영·황규철·김봉희 의원(7명)

1. 제안 이유

- 도내 농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의 내용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규정된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규정된 중복 내용 삭제(제7조 제3호와 제4호)
- 규제개혁 대상 내용 삭제(제7조 제2호)

3. 조례안 : 불 입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입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6조(생 략)	제1조 ~ 제6조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탁의 취소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	제7조(위탁의 취소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</u>	2. <u>(삭 제)</u>
3. <u>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 는 사유가 발생할 때</u>	3. <u>(삭 제)</u>
4. <u>기타 도지사가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</u>	4. <u>(삭 제)</u>

관 계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 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 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 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 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